

# 음악대학 자율운영예산위원회 내규

시행일 : 2011.9.26

제1조(목적)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자율운영예산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음악대학 자율운영예산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,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 위원은 학장, 각 학과장, 기악주임교수, 음악대학 학생회장, 행정실장으로 구성하고,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학장이 되며, 위원장은 행정실 직원 중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
④ 간사는 위원회 제반 실무를 담당하며, 회의록 작성을 담당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음악대학 자율운영예산 심의 및 확정
2. 음악대학 자율운영예산 운영
3. 음악대학 자율운영예산 결산
4.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회의)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위원의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
제5조(정족수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회의록)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7조(회의의 비공개와 비밀유지) ①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위원회 위원은 회의참석 등 위원회와 관련 된 활동으로 인하여 지득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(보칙) 본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본 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본 내규는 201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